|  |  |  |
| --- | --- | --- |
| **기업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비안(備案) 관리조례**  국무원령 제673호  <기업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비안(備案) 관리조례>가 2016년 10월 8일 국무원 제149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6년 11월 30일  제1조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허가 및 비안(備案) 행위를 규율하고 정부의 투자관리 직능 전환을 가속화하며 기업의 투자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기업투자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로 약칭)라 함은 기업이 중국 내에서 투자 및 건설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를 지칭한다.  제3조 국가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전국 차원의 중대한 생산력 배치, 전략적 자원 개발 및 중대한 공공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허가 관리를 실행한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범위와 허가기관, 허가권한은 정부가 허가하는 투자 프로젝트 목록에 따라 집행한다. 정부가 허가하는 투자 프로젝트 목록은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작성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 적시에 조정한다.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전 항에 규정한 것 이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안(備案) 관리를 실행한다.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안(備案) 관리를 실행하는 프로젝트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비안(備案)하며 비안(備案)기관 및 그 권한은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4조 국가기밀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허가 및 비안(備案)은 국가에서 구축한 온라인 프로젝트 감독관리 플랫폼(이하 '온라인 플랫폼'으로 약칭)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허가기관, 비안(備案)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통일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성된 코드를 사용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국무원 투자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온라인 플랫폼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5조 허가기관, 비안(備案)기관은 온라인 프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관련 산업정책을 명시하여야 하고 프로젝트 허가 처리절차, 처리기한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기업을 위하여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젝트 허가 수속을 이행하는 기업은 허가기관에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이 허가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한다. 프로젝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기본 상황;  (2) 프로젝트 명칭, 건설지점, 건설규모, 건설내용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상황;  (3) 프로젝트의 에너지 이용 상황 분석 및 생태환경 영향 분석;  (4) 프로젝트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영향 분석;  기업은 프로젝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 관련 수속의 처리를 프로젝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한 경우 기업은 관련 수속 이행 완료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프로젝트 신청서는 기업이 자주적으로 작성하며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프로젝트 신청서 작성 용역을 중개서비스기구에 의뢰하도록 기업에게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허가기관은 프로젝트 신청서 시범문서를 제정 및 공표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신청서 작성 요구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국무원 관련 부서가 허가하는 프로젝트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은 프로젝트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이하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로 약칭)를 통해 프로젝트 신청서를 전달할 수 있으며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프로젝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허가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국무원이 허가하는 프로젝트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를 통해 프로젝트 신청서를 전달하며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전 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프로젝트 신청서를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 전달하여야 하고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심사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제9조 허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측면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경제안전, 사회안전, 생태안전 등 국가안전 위협 여부;  (2) 관련 발전•건설규획, 기술표준 및 산업정책 부합 여부;  (3) 합리적 개발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여부;  (4) 중대한 공공이익에 불리한 영향 초래 여부.  프로젝트가 관련 부서 또는 프로젝트 소재지 지방 인민정부의 직책과 연관된 경우 허가기관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구해야 하며 의견을 요청받은 조직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허가기관이 중개서비스기구에 프로젝트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평가 중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프로젝트 상황이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기한이 3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평가비용은 허가기관이 부담한다.  제10조 허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상황이 복잡하거나 관련 조직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본 기관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한이 4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허가기관이 중개서비스기구에 프로젝트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허가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허가기관은 프로젝트를 허가한 경우 기업에게 허가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불허가한 경우 서면으로 기업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국무원이 허가하는 프로젝트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기업에게 허가문서를 발급하거나 서면으로 불허가를 통보한다.  제11조 기업이 기(旣) 허가 프로젝트의 건설지점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건설규모, 건설내용 등을 비교적 크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관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변경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허가기관의 허가 결정 또는 변경 동의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년 내에 프로젝트 건설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건설 착공 연기가 필요한 경우 기업은 2년 기한이 만료되기 30일(근무일 기준) 전에 허가기관에 착공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착공 연기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착공 연기는 1회에만 한해 가능하며 그 기한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착공 연기에 관한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비안(備案) 관리를 실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은 착공하기에 앞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비안(備案)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의 기본 상황;  (2) 프로젝트 명칭, 건설지점, 건설규모, 건설내용;  (3) 프로젝트 총투자액;  (4) 프로젝트의 산업정책 부합성에 관한 성명.  기업은 프로젝트 비안(備案)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비안(備案)기관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를 모두 고지받은 즉시 비안(備案)한다. 기업이 고지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비안(備案)기관은 기업의 보정 업무를 지도하여야 한다.  비안(備案)증명이 필요한 기업은 비안(備案)기관에 발행을 요청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출력할 수 있다.  제14조 기(旣) 비안(備案) 프로젝트 정보에 비교적 큰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지체없이 비안(備案)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안(기備案)기관은 기(旣) 비안(備案) 프로젝트가 산업정책에 의해 투자•건설이 금지되었거나 허가 관리를 실행하는 프로젝트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기업에게 시정 또는 법에 따라 허가 수속을 이행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허가기관, 비안(備案)기관 및 법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맡고 있는 기타 관련 부서는 사중(事中)•사후(事後)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심사비준기관 및 주관기관이 감독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감독관리 책임을 구체화해야 하며 온라인 모니터링, 현장 조사 등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착공, 건설공사 진도, 준공 등 기본정보를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허가기관, 비안(備案)기관 및 법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맡고 있는 기타 관련 부서는 프로젝트 정보 공유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기업이 프로젝트 허가, 비안(備案) 및 프로젝트 실시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처리 정보는 국가 사회신용 정보 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공시한다.  제18조 허가 관리를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취급하는 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건설에 착공하였거나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허가받은 건설지점, 건설규모, 건설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허가기관이 건설 중단 또는 생산 중단을 명하고 기업에게 프로젝트 총투자액의 1‰ 이상 5‰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인력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공직자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사기,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프로젝트 허가문서를 취득한 경우 건설 착공 전인 프로젝트는 허가기관이 허가문서를 취소하고 프로젝트 총투자액의 1‰ 이상 5‰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미 건설에 착공한 프로젝트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9조 비안(備案) 관리를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취급하는 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정보 또는 기(旣) 비안(備案) 프로젝트의 정보 변경 상황을 비안(備案)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안(備案)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비안(備案)기관이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0조 기업이 산업정책에 의해 투자•건설이 금지된 프로젝트에 투자 및 건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투자주관부서가 건설 중단 또는 생산 중단과 더불어 원상복구를 명하고 기업에게 프로젝트 총투자액의 1‰ 이상 5‰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인력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공직자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허가기관, 비안(備案)기관 및 그 업무인력이 프로젝트 허가•비안(備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책임이 있는 고위 관계자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묻는다.  제22조 사업기관, 사회단체 등 비(非) 기업 성격의 조직이 중국 내에 투자 및 건설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는 이 조례를 적용받는다. 단, 예산을 통해 배정한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국방과학기술공업기업이 중국 내에서 투자 및 건설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의 허가 및 비안(備案) 관리방법은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관리부서가 이 조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24조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企业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条例**  国务院令第673号  《企业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条例》已经2016年10月8日国务院第149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7年2月1日起施行。  　　　　　　　　　　　　　　　　　总理　 李克强  2016年11月30日  第一条　为了规范政府对企业投资项目的核准和备案行为，加快转变政府的投资管理职能，落实企业投资自主权，制定本条例。  第二条　本条例所称企业投资项目（以下简称项目），是指企业在中国境内投资建设的固定资产投资项目。  第三条　对关系国家安全、涉及全国重大生产力布局、战略性资源开发和重大公共利益等项目，实行核准管理。具体项目范围以及核准机关、核准权限依照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执行。政府核准的投资项目目录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提出，报国务院批准后实施，并适时调整。国务院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对前款规定以外的项目，实行备案管理。除国务院另有规定的，实行备案管理的项目按照属地原则备案，备案机关及其权限由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人民政府规定。  第四条　除涉及国家秘密的项目外，项目核准、备案通过国家建立的项目在线监管平台（以下简称在线平台）办理。  核准机关、备案机关以及其他有关部门统一使用在线平台生成的项目代码办理相关手续。  国务院投资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在线平台管理办法。  第五条　核准机关、备案机关应当通过在线平台列明与项目有关的产业政策，公开项目核准的办理流程、办理时限等，并为企业提供相关咨询服务。  第六条　企业办理项目核准手续，应当向核准机关提交项目申请书；由国务院核准的项目，向国务院投资主管部门提交项目申请书。项目申请书应当包括下列内容：  （一）企业基本情况；  （二）项目情况，包括项目名称、建设地点、建设规模、建设内容等；  （三）项目利用资源情况分析以及对生态环境的影响分析；  （四）项目对经济和社会的影响分析。  企业应当对项目申请书内容的真实性负责。  法律、行政法规规定办理相关手续作为项目核准前置条件的，企业应当提交已经办理相关手续的证明文件。  第七条　项目申请书由企业自主组织编制，任何单位和个人不得强制企业委托中介服务机构编制项目申请书。  核准机关应当制定并公布项目申请书示范文本，明确项目申请书编制要求。  第八条　由国务院有关部门核准的项目，企业可以通过项目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人民政府有关部门（以下称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转送项目申请书，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自收到项目申请书之日起5个工作日内转送核准机关。  由国务院核准的项目，企业通过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转送项目申请书的，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在前款规定的期限内将项目申请书转送国务院投资主管部门，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审核后报国务院核准。  第九条　核准机关应当从下列方面对项目进行审查：  （一）是否危害经济安全、社会安全、生态安全等国家安全；  （二）是否符合相关发展建设规划、技术标准和产业政策；  （三）是否合理开发并有效利用资源；  （四）是否对重大公共利益产生不利影响。  项目涉及有关部门或者项目所在地地方人民政府职责的，核准机关应当书面征求其意见,被征求意见单位应当及时书面回复。  核准机关委托中介服务机构对项目进行评估的，应当明确评估重点；除项目情况复杂的，评估时限不得超过30个工作日。评估费用由核准机关承担。  第十条　核准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是否予以核准的决定；项目情况复杂或者需要征求有关单位意见的，经本机关主要负责人批准，可以延长核准期限，但延长的期限不得超过40个工作日。核准机关委托中介服务机构对项目进行评估的，评估时间不计入核准期限。  核准机关对项目予以核准的，应当向企业出具核准文件；不予核准的，应当书面通知企业并说明理由。由国务院核准的项目，由国务院投资主管部门根据国务院的决定向企业出具核准文件或者不予核准的书面通知。  第十一条　企业拟变更已核准项目的建设地点，或者拟对建设规模、建设内容等作较大变更的，应当向核准机关提出变更申请。核准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是否同意变更的书面决定。  第十二条　项目自核准机关作出予以核准决定或者同意变更决定之日起2年内未开工建设，需要延期开工建设的，企业应当在2年期限届满的30个工作日前，向核准机关申请延期开工建设。核准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是否同意延期开工建设的决定。开工建设只能延期一次，期限最长不得超过1年。国家对项目延期开工建设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十三条　实行备案管理的项目，企业应当在开工建设前通过在线平台将下列信息告知备案机关：  （一）企业基本情况；  （二）项目名称、建设地点、建设规模、建设内容；  （三）项目总投资额；  （四）项目符合产业政策的声明。  企业应当对备案项目信息的真实性负责。  备案机关收到本条第一款规定的全部信息即为备案；企业告知的信息不齐全的，备案机关应当指导企业补正。  企业需要备案证明的，可以要求备案机关出具或者通过在线平台自行打印。  第十四条　已备案项目信息发生较大变更的，企业应当及时告知备案机关。  第十五条　备案机关发现已备案项目属于产业政策禁止投资建设或者实行核准管理的，应当及时告知企业予以纠正或者依法办理核准手续，并通知有关部门。  第十六条　核准机关、备案机关以及依法对项目负有监督管理职责的其他有关部门应当加强事中事后监管，按照谁审批谁监管、谁主管谁监管的原则，落实监管责任，采取在线监测、现场核查等方式，加强对项目实施的监督检查。  企业应当通过在线平台如实报送项目开工建设、建设进度、竣工的基本信息。  第十七条　核准机关、备案机关以及依法对项目负有监督管理职责的其他有关部门应当建立项目信息共享机制，通过在线平台实现信息共享。  企业在项目核准、备案以及项目实施中的违法行为及其处理信息，通过国家社会信用信息平台向社会公示。  第十八条　实行核准管理的项目，企业未依照本条例规定办理核准手续开工建设或者未按照核准的建设地点、建设规模、建设内容等进行建设的，由核准机关责令停止建设或者责令停产，对企业处项目总投资额1‰以上5‰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属于国家工作人员的，依法给予处分。  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项目核准文件，尚未开工建设的，由核准机关撤销核准文件，处项目总投资额1‰以上5‰以下的罚款；已经开工建设的，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九条　实行备案管理的项目，企业未依照本条例规定将项目信息或者已备案项目的信息变更情况告知备案机关，或者向备案机关提供虚假信息的，由备案机关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条　企业投资建设产业政策禁止投资建设项目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投资主管部门责令停止建设或者责令停产并恢复原状，对企业处项目总投资额5‰以上10‰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属于国家工作人员的，依法给予处分。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二十一条　核准机关、备案机关及其工作人员在项目核准、备案工作中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二条　事业单位、社会团体等非企业组织在中国境内投资建设的固定资产投资项目适用本条例，但通过预算安排的固定资产投资项目除外。  第二十三条　国防科技工业企业在中国境内投资建设的固定资产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根据本条例的原则另行制定。  第二十四条　本条例自2017年2月1日起施行。 |